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 4.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 4. 27.
-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3. 5.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구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장학기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 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2012.12.31 조례 제899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으로 본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